

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. 의결주문

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,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,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,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·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어구·부표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고 어구·부표보증금제 미이행 대상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어구·부표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·부표 범위 설정(안 제49조의2)

- 「수산업법」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,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및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통발을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
- 「수산업법」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및 「어장관리법」 제13조제13에 따른 어장에 사용되는 부표를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

나. 포상의 방법 및 절차(안 제73조제3항)

- 어구·부표보증금제도 미이행 대상사업자(어구 생산·수입업체)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·절차를 고시하기 위한 근거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제2호 중 “제21조제1항제17호”를 “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같은 항 제17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통발 (장어통발은 제외한다)”을 “통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통발
4.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
5.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
6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되는 부표
7. 「어장관리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장에 사용되는 부표

제73조제2항 중 “따른”을 “따른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의2(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·부표의 범위)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·부표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·부표(이하 “어구등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	제49조의2(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·부표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	1.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같은 항제17호-----
2.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(장어통발은 제외한다)	2. ----- 통발
3. 어장부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표	3.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통발
<신 설>	4.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
<신 설>	5.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
<신 설>	6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되는 부표
<신 설>	7. 「어장관리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장에 사용되는 부표
제73조(포상의 방법 및 절차) ①	제73조(포상의 방법 및 절차) ①

(생 략) ② 제1항에 <u>따른</u> 포상금의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u><신 설></u>	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따른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</u> ----- ----- -----. 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부 칙 <u><신 설></u>	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